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Regulation

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
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2026.02.26

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
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\*

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,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 
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 
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고자 함

항목	주요 내용
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, 주식을 발행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규정</li><li>•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‘자본’으로 명확화 → 자기주식 교환사채, 자기주식 질권 설정 금지</li><li>• 합병·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배정 금지</li></ul>
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예외적 보유·처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 의무화(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)</li><li>• 지분에 비례한 균등처분, 임직원 보상, 우리 사주, 스톡옵션, 인수합병 등의 경우, 이사회가 자기주식보유·처분계획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</li></ul>
자기주식 처분 절차에 신주발행 규정 준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에 준하는 절차나 주주 보호장치를 요구</li></ul>

(\*1) 국회 의안정보시스템, “[2216966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회)”, 2026.2.23.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
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##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확화



### 개정 내용

<b>현행 상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1을 초과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단,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, 또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</li></ul></li></ul>
<b>개정 상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자기주식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</li><li>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 금지</li><li>회사 보유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</li><li>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단, 상기 현행 상법의 질권 설정 예외 조항은 유지됨</li></ul></li><li>회사 합병·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배정 금지</li></ul>



### 자기주식이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

- 의결권 (상법 제369조)
- 신주인수권 (상법 제418조)
- 주식을 발행 받을 권리 (상법 제461조제2항)
- 배당을 받을 권리 (상법 제462조~제462조의4)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
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##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(1)



### 개정내용

<b>현행 상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소각 의무화에 대한 조항은 없음</li><li>• 처분 주식 종류 및 수, 처분가액 및 납입기일, 처분 상대방 및 방법과 관련한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가 결정</li></ul>
<b>개정 상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(원칙)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취득 사유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</li></ul></li><li>• (예외) 임직원 보상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이사회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자기주식보유·처분계획을 주주총회가 승인하면 예외적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매 사업연도별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 필요</li><li>- 자기주식 처분 시,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고,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➢ 단, 일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*1,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 처분 가능</li><li>➢ 이 때, 처분 주식 종류 및 수, 처분가액 및 납입기일, 처분 상대방 및 처분방법 관련 정관 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나,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이 주총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는 적용 제외</li></ul></li></ul></li><li>• (과태료) 소각 의무 또는 자기주식보유·처분계획 위반 시, 이사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</li></ul>

(\*1) 동 개정안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임직원 보상,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, 주식의 포괄적교환 및 포괄적 이전, 흡수합병,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이 가능함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
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##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(2)



###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관한 부칙

- 기존의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
- 기존의 간접 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함
- 단, 동 법 시행 당시 기존 직접·간접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다음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,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기주식을 동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
  - 다만,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 자기주식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·처분 가능

1. 「항공안전법」제10조제1항제4호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68조제1항
3. 「공기업을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제19조
4. 「방송법」제14조
5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4항제3호
6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8조제1항
7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제9조제1항 및 제2항

(\*1) 동 개정안의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
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## [참고]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



### 개정내용

기존 판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</li></ul>
개정 상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조항을 준용하여 신주발행에 준하는 절차 및 주주보호장치를 요구</li></ul>



### 자기주식 처분 시 준용 상법 조항

- 제417조(액면미달의 발행)
- 제418조(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·공고)
- 제419조(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)
- 제421조(주식에 대한 납입)
- 제422조(현물출자의 검사)
- 제423조(주주가 되는 시기, 납입해태의 효과) 제2항 및 제3항
- 제424조(유지청구권)
- 제424조의2(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)
- 제427조(인수의 무효주장, 취소의 제한)
- 제428조(인사의 인수담보책임)
- 제429조(신주발행무효의 소)
- 제430조(준용규정)
- 제431조(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)
- 제432조(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)